-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의3서식] <신설 2019. 3. 14.>
- 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 제 호							
원호	로 사용기준	[]	지정 변경지정	성 심사	결과	통지시	.
상호 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)			등록 (화장품제조원 장품책임판매 또는 법	업자 또는 화 업자만 해당)			
소재지							
성명							
심사항목							
분류	[] 색소	[] <u>+</u>	보존제 [] 자외선차딘	·세	[]기타	
성분명							
적합여부							
보완자료 (필요시)							
비고							
「화장품법」 제8조 준 (변경)지정 심사결	·제7항 및 같은 법 시 결과를 통지합니다.	l행규칙	제17조의3제	3항에 따라 위	리와 같O	원료 사	용기
					년	원	일
	식 품의	약품	· 안전 처 장	당 직인			